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평가 분류에 따른 중점·간이평가제도 도입 등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9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평가 분류에 따른 중점·간이평가 제도 도입	3
2.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20
※ 참고자료	30
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및 비교	30
2.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31
3. 평가 분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32
4. 환경영향 추정기법(안)	34
5. 중점평가사업 관련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37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38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6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관련 안 제2조제7호, 제7조의2,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의2,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평가 분류에 따른 중점·간이평가제도 도입

개정안은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절차를 구분하는 평가 분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②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중점평가 대상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중점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간이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생략 시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④ 평가 절차 생략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작성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⑤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평가 분류”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u>기 전에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과 입지 특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u> <u>제7조의2(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분류)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u> <u>1. 중점평가 대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입지 특성, 규모·내용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상 지역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u> <u>2. 간이평가 대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입지 특성, 규모·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 지역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추정기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u>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④ ~ ⑥ (생략)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분류 적용 대상,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 ----- ----- -----제 11조제1항제5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분류 결정에 따른 차등화된 절차 등 제21조의2(중점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등) ① 중점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실시하면서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할 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3(간이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 생략 등)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

현행	개정안
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⑤ ~ ⑧ (생략)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평가 분류 여부 및 분류 내용</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u>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분류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

현행	개정안
<신설>	지와 같음)
<신설>	제4절의2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평가 분류 결정에 따른 차등화된 절차 등
<신설>	제41조의2(중점평가 대상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등) ① 중점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을 하 려는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실시하면서 제25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활 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신설>	제41조의3(간이평가 대상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절차 생략 등) ① 간 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사업 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현행	개정안
<신 설>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7조부터 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승인기관장등이 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 결정 요청 등 다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대한 평가 분류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평가 분류할 수 있다. ② 간이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소

현행	개정안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간이평가 대상 결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며, 환경보전방안 이행의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승인기관장등이 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 분류 결정 요청 등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현행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u>평가서 초안</u> 및 평가서 2. 3. (생략) 4. <u>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u> ② ~ ⑥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 ----- ----- ----- ----- -----. 1. ----- <u>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u>,----- 2. 3. (현행과 같음) 4. <u>제21조의3, 제33조 및 제41조의3, 제43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등</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2. ~ 7.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4. ~ 8.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의3제3항 및 제43조의2제4항, 제49조제2항에 따라----- ----- 3의2.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한 자 4. ~ 8.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현행	개정안
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u>아니한 자</u>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u>아니한 자</u> 3. (생략)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u>아니한 자</u>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u>아니한 자</u> 6. ~ 9. (생략) ⑤ ~ ⑥ (생략)	-----. 1. ----- ----- ----- ----- <u>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2. ----- ----- -----<u>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3. (현행과 같음) 4. ----- ----- ---<u>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5. ----- ----- ----- ----<u>아니한 자(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6. ~ 9.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현행	개정안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부터 제6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항부터 제7항,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계획이나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협의 요청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협의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가 있으며¹⁾,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²⁾³⁾하고 있음.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26개 분야 116개 정책, 개발기본계획) ex) 도시·군관리계획, 도로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81개 개발사업) ex)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개발제한구역(GB) 5,000㎡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등 ex) 주택, 공장, 체육시설

※ 출처: 환경부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중점평가 대상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중점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주민 의견수렴 등 아래 표 ③~⑤)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생략)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생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참고자료1. 환경영향평가등의 비교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절차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전략 환경영향평가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중점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 + 공청회 의무화 + 환경부 지원
환경영향평가	②평가 항목·범위 결정 ③평가서(초안) 작성 ④주민 의견수렴 ⑤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간이평가 대상) 현행 절차 중 ③~⑤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와 같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간이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와 같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평가 분류 제도 도입에 대하여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질적인 평가가 생략(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되어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② 이러한 평가절차 생략 시 작성되는 환경보전방안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③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리우선언, OECD 권고⁴⁾ 등 국제권고사항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 민원 유발과 갈등이 심화되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⁵⁾이 있

4) - 리우선언: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짐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OECD 권고: 환경적의사결정에 공공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조
※ 출처 : 환경부

는 바,

평가 분류 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평가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1조제4항 등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 여부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안 제11조제5항 등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종 결정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이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

둘째,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평가 분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은 개정안에 따른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 및 그 외 현행 절차에 따른 평가 대상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중점평가 대상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 대상을 두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대한 분류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6)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아닌 승인기관의 장 등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간이평가 절차에 대하여 각 평가별로 유사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법제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간이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현행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⁷⁾한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협의한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재협의) ① ----- ----- ----- ----- ----- ----- ---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 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 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② <u>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u> 1.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u> 2.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u> ③ (생략)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략)	<u>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u>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u>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u>생략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u>경과하지 아니한</u>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u>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u>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u>경과하지 아니한</u> 경우 ④ (생략)	③ ----- ----- ----- ----- -----<u>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u> 1. ----- ----- ----- ----- -----<u>경과한</u>----- ----- 2. -----<u>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u>이 환경부장관 ----- ----- -----<u>경과한</u>-----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한 사업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취소·실효되는 경우에도 사업 미착공과 마찬가지로 재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취소·실효되는 경우에 대한 재협의 생략만을 규정⁹⁾하고 있어 생략에 대응하는 재협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 재협의 의무와 생략에 대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9)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에 대한 재협의 요청 의무를 신설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협의 규정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의무	①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② 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③ 사업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 ②③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 재협의 요청 의무가 도출됨(환경부 의견)	현행과 같음 ※ ②③에 대하여 재협의 요청 의무를 법률에 명시
	재협의 요청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①의 경우에만 생략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①, ②, ③ 모두 생략 가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의무	① 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② 사업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 ①②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 재협의 요청 의무가 도출됨(환경부 의견)	현행과 같음 ※ ①②에 대하여 재협의 요청 의무를 법률에 명시
	재협의 요청 생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①, ② 모두 생략 가능

※ 출처: 환경부

다만, 현행법 제4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 시행이 예정¹⁰⁾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제44조제3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시행예정 법률, 개정안 비교 및 수정의견]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략)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u>

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34호, 2025. 2. 21. 시행예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2. (생략)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u>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u> <u>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u>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1. (현행과 같음)	1. ----- -----	1. (개정안과 같음)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u>경과하지 아니한</u>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u>경과하지 아니한</u>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 ----- ----- ----- ----- ----- ----- -----<u>경</u> <u>과한</u>----- --- 2. ----- -----<u>대상사업</u> <u>의 승인 또는</u> <u>확정이</u> 환경부 <u>장관</u>----- ----- ----- ----- ----- -----<u>경</u> <u>과한</u>----- ---	2. (개정안과 같음) <삭 제>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 제4항 과 같음)

문의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및 비교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주요기능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대규모 실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입지결정 후,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평가대상규모 미만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입지타당성과 환경영향 예측·저감방안 강구
협의시기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상위 행정계획 확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해당 사업의 인·허가전
대상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26개 분야 116개 정책·개발기본계획) ex) 도시·군관리계획, 도로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81개 개발사업) ex)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개발제한구역(GB) 5,000㎡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등 ex) 주택, 공장, 체육시설
협의요청	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개발사업 승인기관의 장	개발사업 승인기관의 장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30명이상 요청시 공청회 실시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30명이상 요청시 공청회 실시	제외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부합, 대안설정)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지형경관, 수환경), 생활환경 (환경기준 부합성, 기초시설 적정성, 에너지순환), 사회·경제조화(환경적 토지이용)	6개 분야, 21개 항목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8개 항목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 기질·악취, 수질·해양환경, 토 지이용·토양·지형·지질, 자원순 환·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주거·산업
협의체계	-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환경부장관 협의 - 그 외의 경우 → 유역·지방환경청장 협의(※풍력 제외)		
협의절차	① 평가협의회 심의 ② 평가서 초안 작성 ③ 주민,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④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 보완요청 가능	① 평가협의회 심의 ② 평가서 초안 작성 ③ 주민,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④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 보완요청 가능	① 평가서 작성 ② 평가서 협의 ※ 보완요청 가능
협의기간	초안 (30일) ※ 의견수렴 본안 (30일, 10일 연장가능)	초안 (30일) ※ 의견수렴 본안 (45일, 15일 연장가능)	30일(10일 연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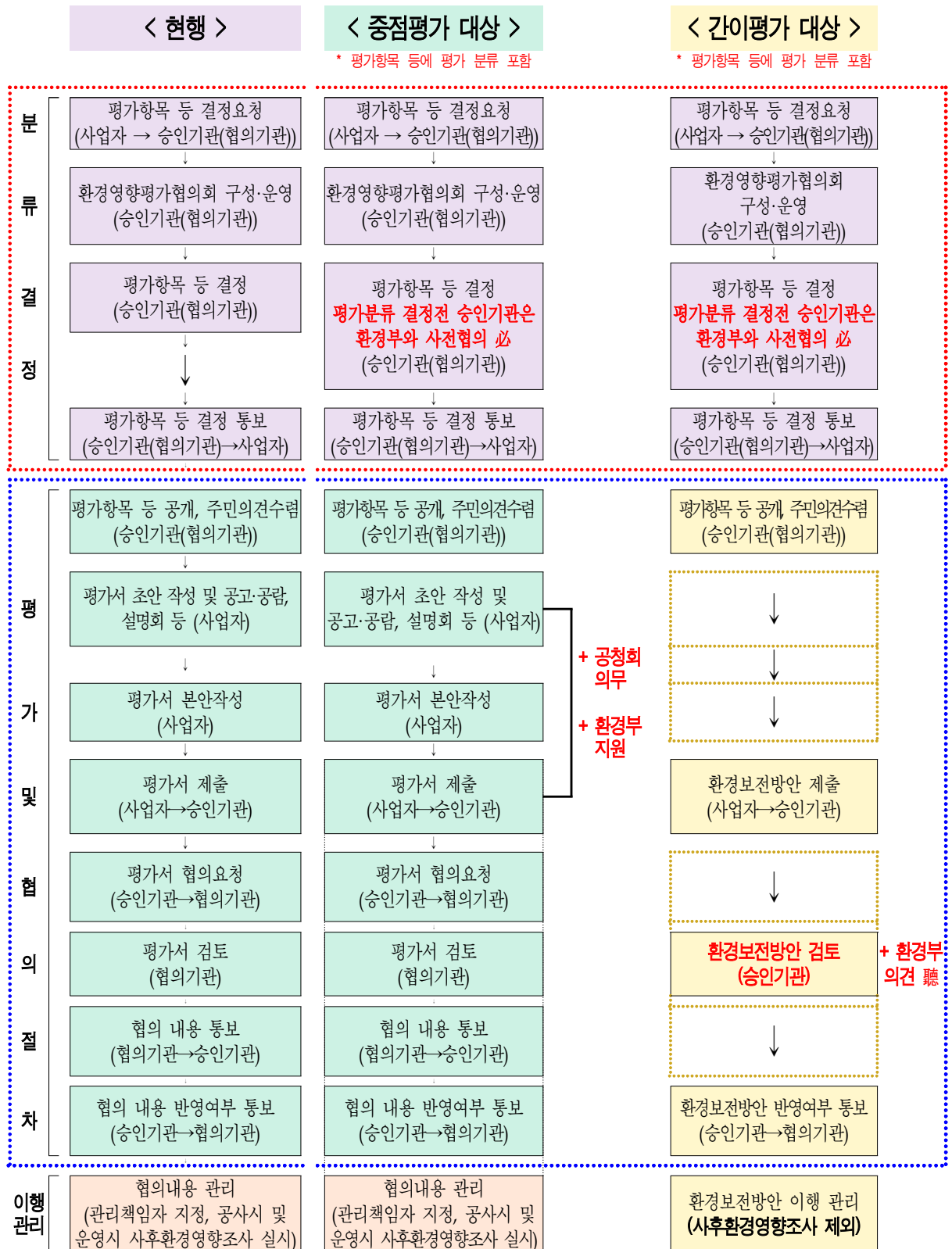
※ 출처: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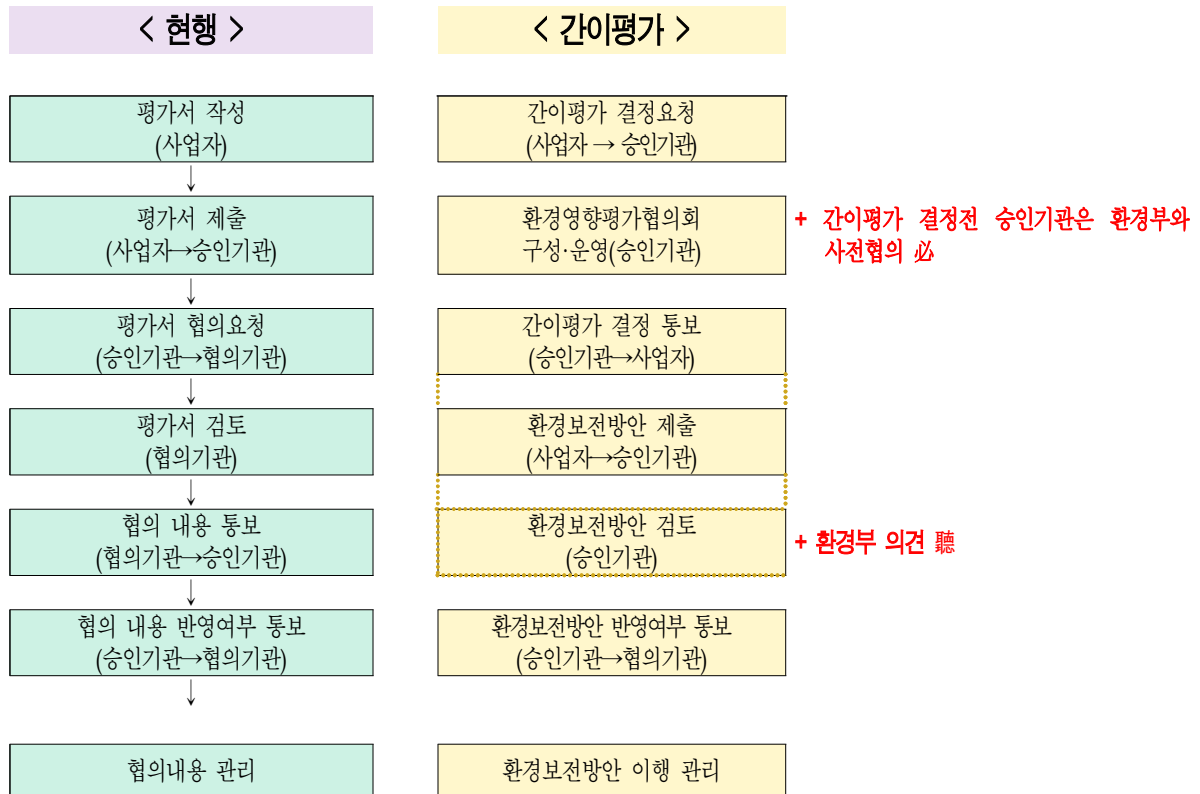


※ 출처: 환경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출처: 환경부

4. 환경영향 추정기법(안)

□ 개요

-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 변수별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 분포에 따라 평가 분류 결정

□ 산업단지 대상 추정기법(안)

- **(생활환경)** 건강영향 관련 주요 변수 8개 적용·점수화, 10점을 초과하면 중점평가, 배출시설 입주 없으면 간이평가 가능

변수(안)	평가방법(안)
①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허용 : 1점, 미허용 : 0점
②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배출 : 1점, 미배출 : 0점
③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배출 : 1점, 미배출 : 0점
④ 영향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	이용 관정 부재 : 0점, 음용 이외 관정 : 1점, 음용 관정 2점
⑤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현황	영향지역 내 부재 : 0점, 1-2개 : 1점, 2개 이상 : 2점
⑥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5} 초과 여부	초과 물질 부재 : 0점, 1개 물질 초과 : 1점, 2개 이상 초과 : 2점
⑦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 ² 초과 여부	393명/KM ² 미만 : 0점, 393명/KM ² ~ 589명/KM ² 미만 : 1점, 589명/KM ² 이상 2점
⑧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학교,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병원, 장애인 시설)	부재 : 0점, 2km - 0.5km 초과 : 1점, 0.5km 이내 : 2점

- **(자연환경)**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여 접근 가능한 주요 보호지역 18개 적용·점수화, 10점을 초과하면 중점평가, 0점 간이평가 가능

변수(안)		평가방법(안)
① 생태경관보호지역	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사업대상지 내 존재 : 2점 영향지역 내 존재 : 1점 부재 : 0점
② 습지보호지역	⑪ 천연보호구역	
③ 습지주변관리지역	⑫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④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⑬ 상수원 보호구역	
⑤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⑥ 수변구역	⑮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⑦ 지하수보전구역	⑯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⑧ 자연환경보전지역	⑰ 오염행위 제한지역	
⑨ 녹지지역(보전녹지)	⑱ 생태자연도 1등급지	

⇒ 최근 점수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50개를 분석한 결과 중점평가 대상은 5건, 간이평가 대상은 2개 혹은 3개로 잠정 분석됨

□ 추정기법(안) 적용 사례(산업단지)

◆ (환경영향 大) OO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유치하는 사업유형으로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영향을 추정
한 결과 11점으로 중점평가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 충주시 00면
- 면 적 : 290,178m²
- 사업내용 : 산업시설 용지(204,068m²), 지원시설 용지, 주차장, 도로, 공원 등
- * 업종: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생활환경 영향 추정결과 : 총점 11점으로 중점평가 대상

변수	점수	설명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1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 유형임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1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1	
영향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	1	사업지구에서 1.3km 지역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현황	2	3개: OO첨단, OOD림파크, OO바이오헬스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 ⁻⁵ 초과 여부	1	포름알데히드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 ² 초과 여부	2	589명/KM ²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2	OOO 꿈의 유치원, OO초등학교병설 유치원, OO중학교, OO초등학교
총점	11	



◆ (환경영향 小) OO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유형으로 자연환경 영향 추정결과 0점으로 간이평가 가능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 충주시 00면
- 면 적 : 1,269,760m²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 주차장, 공원정비, 도로환경 개선 등

○ 자연환경 영향 추정 결과 : 총점 0점으로 간이평가 대상

변수	점수	비고
생태경관보호지역	0	OO시에는 해당 지역이 없음
습지보호지역	0	
습지주변관리지역	0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0	남동측 23.9km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0	백두대간 23.5km, 한남정맥 24.4km
수변구역	0	하류 10km 이상 이격
지하수보전구역	0	
자연환경보전지역	0	이격거리 1.5km
녹지지역(보전녹지)	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0	
천연보호구역	0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0	
상수원 보호구역	0	유하거리 1.4km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0	지정되어 있지 않음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0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0	
오염행위 제한지역	0	
생태자연도 1등급지	0	2등지가 일부 존재(사업지구 내 공원)
총점	0	



※ 출처: 환경부

5. 중점평가사업 관련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 중점평가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중대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재검토를 통보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

□ 협의업무 절차

- (합동현지조사)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 실시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장)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
- (위원) 협의기관 부서장, 승인기관 부서장, 사업자 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전문검토기관등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명 내외로 구성
- (기능)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마련 등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중점평가대상 선정 사례(21년~현재)

연도	협의기관명	사업명
2023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2022	금강유역환경청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2022	금강유역환경청	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1	금강유역환경청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1	금강유역환경청	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변경7차)

※ 출처: 환경부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31조, 제52조제3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

□ 기능 및 운영주체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 등 심의 : 계획 수립기관, 승인기관 등
- ※ 환경영향평가지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협의기관의 장)이 구성·운영(법 제24조제3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약식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환경부장관 또는 협의기관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판단에 관한 사항 심의 : 협의기관

□ 구성 : 10인 내외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위 원)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

- ①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② 계획 수립기관 장 또는 승인기관 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③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④ 협의기관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⑥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장(협의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이상
- ⑦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각 1명 이상
 - 해당 계획·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경우)

※ 출처: 환경부